

생활관 벌점제

1. 목적

2. 생활 벌점제 구성

가. 생활관 내에서 생활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는 위반내용에 따라 정해진 '경고'나 '훈계'를 할 수 있다.

나. '훈계는 1 달간 누적 관리하고, 3 회 이상 누적되면 '경고'가 주어진다.

다. '경고'가 3 회 이상 누적된 관생에 대하여는 영구 퇴사나 퇴사의 징계를 할 수 있다. 단, 소명의 기회는 부여할 수 있다.

라. '경고'나 '훈계'의 수행자는 각동 사감과 순찰 사감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학생정책처장이 지명하는 자도 포함한다.

3. 생활 벌점제의 적용 대상

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4. 벌점의 경감

생활관 내에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한 관생에 대하여는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하며, 포상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경고를 경감할 수 있다.

5. 벌점부과기준

생활관 내에서의 수칙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벌점		위반내용
영구 퇴사	100	. 화재(실화 및 방화) 및 절도 행위 . 이성 간의 혼숙 행위 . 폭력 행위(상벌위원회 징계) . 생활관 입사 신청권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자, 양수한 자 및 이에 협력한 것으로 인정된 자.

별점		위반내용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타인으로 하여금 생활관을 혼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력한 것으로 인정된 자 및 이로 인하여 생활관을 혼자 사용한 자. . 입사 또는 퇴사시 이동기간까지 퇴사 또는 입사를 위해 이동을 완료하지 않는 자. . 이동기간에 집을 빼지 않고 방치하여 해당 실 입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.
경고	8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고의적인 기물 파손 행위 . 룸메이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 (밤 11시 이후 게임, 노래, 긴통화, 컴퓨터 작업 등)
경고	5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폭력 행위 . 우편물 등을 무단으로 수취 또는 개봉하는 행위 . 이성(異性)의 방을 출입하거나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. 외부인을 무단 입실시키는 행위 . 비흡연 지역에서의 흡연하는 행위 . 도박, 음주 및 취사 행위 . 화재 유발 행위(*전열기, 인화물 소지/사용) . 생활관 관리자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하는 행위) . 동물 사육 행위
경고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공공기물, 비품의 호실 간 무단이동 및 개인소유 행위 . 학생복지팀 승인없이 호실을 임의 이동 하는 행위 . 고성 방가등 생활관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. 지정된 장소 이외 구토, 대소변 행위
경고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개인물품을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 . 휴게실 내 장시간 취침, 세탁물 건조 행위 . 개인 호실 정리정돈, 청결 불량상태(극심한 경우)

* 생활관내 승인된 전열기 : 전기포트, 헤어드라이기

6. 벌점 누적자에 대한 조치 사항

가. "경고(벌점)"을 받은 관생에게는 "경고(벌점)장"을 발부한다.

나. "영구퇴사" 및 "퇴사" 대상자의 징계는 학생정책처장이 시행한다.

다. "영구퇴사" 나 "퇴사" 결정 대상자의 학부모 및 지도교수에게 "퇴사"를 통보한다.

라. "경고(벌점)"를 받은 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학생정책처장은 재심사 하여 정당성과 형평성이 인정된다면 벌점을 경감